

호주의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제도

최정희 |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조교수, 법학박사(SJD)

I 들어가며

IT기술의 발전으로 전통적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주체가 사업자였던 단계를 넘어서, 일반 시민들이 자신이 가진 재화와 서비스를 빌려서 쓰거나 나눠서 쓰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단계로 발전을 하였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재화나 서비스를 빌려서 쓰거나 나눠 쓰는 것을 의미하는 광범위한 의미의 용어이다. 즉 공유경제는 기존의 렌탈비즈니스가 스마트폰 및 각종 디지털 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되어 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¹⁾ 물론 공유를 한다는 것은 나눠쓴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유”경제는 대부분 돈에 관한 것이고,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는 당연히 적절한 규제와 과세가 뒤따라야 한다.

공유경제의 빠른 발전에도 불구하고 세금징수 및 공정한 경제와 관련된 규제(regulation)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호텔과 택시들은 대부분 규제범위내의 산업에 속해있지만, 이러한 규제를 벗어나는 공유경제 서비스는 동등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활발하게 변화하는 행동에 대하여 입법을 하려고 할 때 규제자들이 당면하는 어려움은 이해할만 하지만 불확실성이 공유경제로 확장되고 있다.²⁾

공유경제 내에서 증가하는 많은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 중 중요한 것은 혁신자(innovators)들에 대한 취급과 전통적인 거래의 취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큰 영역은 다른 과세상의 취급, 특히 단기 주택 렌트에서 보여진다. 공유경제활동에서의 단기 거주지 임대는 당연히 기존의 주택 렌트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과세상의 취급과 같은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이의 희생으로 특정그룹에게 유리한 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새로운 공유경제가 과세가 되지 않는다면 부족한 세금은 기존의 경제 법칙에 적용을 받는 자에게는 불공정성을 발생시키게 된다.

호주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가 이미 시작되었고, 2019년 1월에는 신문 기사에 따르면 현재 호주에 선 1,100만명 이상이 차량공유서비스 ‘우버’나 숙박공유사이트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참여해 연간 150억 호

1 [IT 칼럼]공유경제 장점, 한국 사회 꼭 필요하다, 주간경향 1335호 2019. 7. 15.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811261546421&code=114> 에서 이용가능(최종검색일: 2019. 7. 20.)

2 Daniel K. McDonald, Is the Sharing Economy Taxing to the Traditional?, 16 Fla. St. U. Bus. Rev. 73, 2017, p.73.

주달러(약 12조 8,000억원) 소득을 얻는 것으로 추정된다.³⁾

그리고 최근 연방 재무부는 공유경제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개인 소득 과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득 신고 의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공유경제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빠짐없이 과세를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호주의 공유경제 과세의 특징은 공유경제 사업모델이 전통적 용역공급자와는 다르지만 호주의 국세청은 현재 상태 그대로 세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공유경제의 서비스 공급자를 전통적 서비스 공급자와 같은 납세의무를 지우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개인이 늘어나면서 그 개인이 향유하는 소득도 많아지고 있다. 당연히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되어야 하지만 아직 그러한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현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서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해나가고 있는 호주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클 것으로 생각된다.

II 공유경제 일반

1. 공유경제의 정의

공유경제에 대한 정의는 대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장과 사용이 수십년 간 이루어져 왔지만, 정확한 정의를 찾기가 어렵다.

일반적으로 공유경제는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을 연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소유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연결은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서비스에 대하여 더 싼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⁴⁾ 또는 공유경제란 개인 대 개인 협약(peer-to-peer arrangements)을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이 초과하여 가지고 자산이나 다른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소비, 분배하는 모델로 설명되기도 한다.⁵⁾

또는 구체적으로 공유경제는 사람들이 자산과 서비스를 대가(fee)를 받고 공유하는 웹사이트나 앱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경제활동을 의미한다.⁶⁾

2. 공유경제의 유형 및 현황

공유경제가 적용되는 범위는 모든 유형·무형의 자원이 그 대상이며,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활용하는 플랫폼기반 공유경제 유형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3 ATO hunts hidden income from Uber, Airbnb and other gig economy workers, 2019. 1. 23, available at <https://www.abc.net.au/news/2019-01-23/ato-hunts-australians-hiding-income-via-uber-and-airbnb/10742528> (최종검색: 2019. 7. 20).

4 Daniel K. McDonald, *supra* note 2, p.75.

5 Shu-Yi Oei & Diane M. Ring, Can Sharing Be Taxed?, 93 Wash. U. L. Rev. 989, 2016, p.997.

6 Australian Taxation Office, The Sharing Economy And Tax, available at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 (최종검색: 2019. 7. 20).

2018년 조세연구원의 연구⁷⁾에 따르면 공유경제의 영역이 16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며, 그 분야는 아래의 표처럼 분류될 수 있다.

표 1 | 공유경제 영역

No	구분	세부 분류
1	차량공유(Vehicle Sharing)	차량임대, 보트임대
2	운송 서비스(Mobility Service)	지원, 발렛서비스, 탑승서비스
3	서비스(Service)	개인, 사업
4	음식(Food)	음식 배달, 음식 공유, 음식 준비 공유
5	제품(Goods)	메이커운동, 제품임대, 중고제품
6	금융(Money)	전자화폐, 크라우드펀딩, 대금업
7	공간(Space)	개인공간, 사무공간
8	복지·미용(Wellness&Beauty)	미용, 복지
9	물류(Logistics)	해상운송, 시내배달, 보관
10	기업 및 조직(Corporate and Organizations)	플랫폼, 공급망, 고용자 서비스
11	유틸리티(Utilities)	통신, 에너지
12	도시행정(Municipal)	플랫폼, 시 공영 자전거
13	교육(Learning)	강의, P2P, 책공유
14	노동자지원(Worker support)	임대업자 서비스, 보험, 노동자원
15	분석 및 평판(Analytics and Reputation)	운전자서비스, 신분 및 평판, 임대업자 서비스
16	의료(Health)	서비스·P2P

한국의 경우 상업적 공유경제 형태로 공유경제가 성장하였는데, 숙박업, 자동차임대업, 사무공간 임대업에서 발전하였다. 숙박업은 2017년 에어비앤비의 진출을 시작으로 그 해 말에는 서울 시내에만 30,735호실의 호스팅이 이루어질 정도로 발전하였다. 자동차임대업의 경우에는 B2C 위주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SK네트웍스가 2대 주주인 쏘카와 롯데렌탈의 자회사인 그린카가 2018년 말 기준으로 시장을 점유하며 대기업 위주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무공간임대업의 경우 비즈니스 센터, 서비스드 오피스 등의 이름으로 주요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공급되어 있다.⁸⁾ 금융에서는 대출형 크라우드펀딩(P2P대출) 규모는 2018년 9월 기준 4조 2,726억원을 돌파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도시행정유형으로는 공공 자전거 사업이 서울, 고양, 세종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2008년부터 시행중이며 시설 보급 및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7 김재진 외 2인,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체계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4-16면 수정하여 정리.

8 정석원, 공유경제 개념의 변화와 한국의 공유경제, 산은조사월보 제756호, KDB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2018. 11., 77-80면 참조.

3. 공유경제의 과세의 특유한 문제

공유경제와 관련한 과세상의 특유한 문제는 개인공급자와 개인소비자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플랫폼 사업자를 매개로 하여 개인공급자와 개인소비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과세상 쟁점은 P2P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개인공급자간의 거래에 대하여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는 플랫폼 기반의 공유경제에 대한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과세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소득세부과를 위하여 전통적인 고정사업장을 대신할 디지털경제에서의 고정사업장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논의 중에 있다. 또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내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국내의 개인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두 번째 과세상 쟁점은 개인공급자에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특히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공급자의 소득구분이 확실하지 않다는 것, 과세당국의 소득파악이 힘들 경우, 공급자가 과세신고여부와 관련하여 세법규정을 알지 못할 경우 과세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자만 부가가치세 의무를 지게됨으로 개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 징수할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첫 번째 과세상 쟁점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시간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두 번째 쟁점에 집중하여, 현재 호주에서의 개인공급자에 대한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등 세법상 취급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과세 근거 확립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밝히고자 한다.

그림 11 공유경제 사업모형



〈출처〉 김재진 외 2인,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체계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22면.

III 호주의 공유경제 과세제도

1. 과세대상 공유경제활동

호주 국세청은 수수료(fee)를 지불하고 플랫폼을 통하여 서비스와 자산을 제공하는 경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goods and services tax; GST)⁹⁾가 부과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하며, 그러한 공유경제의 대표적 4가지 유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다.¹⁰⁾

- ① Uber, Hi Oscar, Shebah 또는 GoCatch 같은 플랫폼을 통하여 일정 요금을 받고 승차공유서비스(라이드소싱; ride-sourcing)를 제공하는 것¹¹⁾
- ② Airbnb, HomeAway 또는 Flipkey 같은 플랫폼을 통하여 방, 집 전체, 또는 단기로 주택일부를 빌려주는 것
- ③ Camplify, Car Next Door, Spacer, Toolmates 또는 Quipmo 같은 플랫폼을 통하여 차량, 카라반/RV차량, 주차공간, 개인 물품을 포함한 자산을 공유하는 것
- ④ OneFlare, Mad Paws 또는 Hark Hark 같은 플랫폼을 통하여 그래픽디자인, 웹사이트 개설과 같은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또는 배달과 가구조립과 같은 잡일을 포함한 개인 용역을 제공하는 것¹²⁾

그러나 Gumtree, eBay 또는 Carsales와 같이 온라인 판매 또는 온라인 안내광고란(classifieds), 가상화폐 교환(cryptocurrency exchanges), P2P(개인 대 개인) 금융, 클라우드 펀딩은 공유경제의 부분으로 보지 않으나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질 수 있다.¹³⁾

아래에서는 위의 네 가지 공유경제 유형, ① 승차공유(라이드 소싱; ride-sourcing), ② 주택의 일부 또는 전부의 임대(renting out all or part of a house), ③ 자산의 공유(sharing assets), ④ 용역제공(providing services)을 중심으로 하여, 소득세 측면, 부가가치세 측면, 양도소득세 측면으로 나누어 과세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소득세 측면

(1) 과세포함 소득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그러한 제공활동이 취미나 오락을 추구(recreational pursuit)하는 것으

9 Goods and Services Tax(GST)를 단어 그대로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 "재화와 용역세"라고 번역을 해야 할 것이나 그 내용은 부가가치세의 본질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부가가치세(GST)로 번역을 하기로 한다.

10 ATO, *supra* note 6.

11 자동차 탑승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12 이것을 킥 경제(gig economy)라고 칭하기도 한다.

13 ATO, *supra* note 6.

로 생각될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면 소득세 목적상 과세가능 소득이 된다. 호주 국세청은 납세자가 비정기적 베이스로 일을 할 경우(한 달에 한 두어 번 정도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 그 납세자는 사업으로 표시될 행동의 스케일이나 연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업이라고 간주되지 않을 정도의 행위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세청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해진 예를 참고한다면, 최소 기준(de minimus) 이상의 모든 공유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사업으로 간주될 것이다.¹⁴⁾

특별히 독립적인 지위에서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공유경제 웹사이트의 사용에서 그러하듯이 그 활동에 상업적 성격을 부여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매우 적은 규모로 공유경제플랫폼을 통하여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그러한 납세자는 그 서비스에 대하여 받은 대가를 과세가능소득에 포함시켜야 하고 그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공유경제활동에서 공통적인 것은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소득세 신고 시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승차공유(라이드 소싱)의 경우 받은 요금, 팁 뿐만 아니라 플랫폼으로부터 받은 보너스까지 소득에 포함하고 있다.¹⁵⁾ 자산공유의 경우 그 소득이 매우 적고, 납세자의 직업 또는 사업활동으로 부터의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만 행하는 것이라 해도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¹⁶⁾

(2) 비용의 공제

수입을 창출하는 공유경제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과, 공유경제플랫폼의 사용과 관련한 비용은 1997년 호주소득세법 §8-1에 따라 공제가 가능하다.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유형의 공유경제활동의 비용공제와 관련하여 공통적인 사항은 ① 요금을 받고 공유경제활동을 한 시간과 그 활동에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과 ② 모든 비용지출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록 및 증빙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유경제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은 사업용과 개인적 용도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업적 용도로 쓰인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하는 것, 즉 비용배분(apportionment)을 해야 한다.

14 Wolters Kluwer, Australian Master Tax Guide, 64th Edition, 2019, ¶12-135.

15 ATO, *supra* note 6.

16 *Id.*

I 표 2 | 공유경제활동에서 공제 가능한 비용 유형

	승차공유 (라이드소싱)	주택의 부분 또는 전체 임대	자산 공유	용역 제공
공제 가능 비용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가상각 ·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 · 연료 ·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비용 · 주차비용 · 승객이 지급하지 않는 톨게이트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 요금 · 자산 관련 대출이 있는 경우 그 이자 · 전기와 가스비용 · 자산에 대한 보험 · 청소비용 · 수선비용 ·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수선 또는 서비스(설치·수리·유지 등) · 감가상각 · 보험 · 등록비용 (예: 차량, 카라반/RV 차량, 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 비용 · 자산의 수선, 유지, 교체 · 자택사무실(home office) 비용

〈출처〉 Australian Taxation Office, The Sharing Economy And Tax(available at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에서 본문의 내용을 정리함.

승차공유(라이드소싱)의 경우 일년동안 특정 사용에 대한 매일의 기록을 작성하고 항목별 계산서로부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¹⁷⁾

주택임대의 경우 국세청 가이드라인은 당해 연도 그 집이 임대되는 비율 및 그 집이 임대되지 않았을 때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에 근거하여 비용의 배분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그 비용 산정에 대한 호주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¹⁸⁾

〈호주국세청 가이드라인의 예〉 집의 부분을 임대한 경우

제인(Jane)은 인기 있는 시내중심가에 욕실이 두 개가 딸린 침실 두 개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제인은 혼자 살고 있고, 욕실이 딸린 침실을 사용하고 있으며, 남은 방 하나는 가끔씩 물품을 보관하거나 손님이 왔을 때 제공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또 다른 욕실은 집의 주요 부분에서도 접근이 가능하고 주로 방문자들이 사용한다.

제인은 여분의 방을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임대하여 소득을 얻고자 결정하였다. 아파트는 총 80스퀘어미터이고, 임대가 되는 여분의 방은 10스퀘어미터이다. 제인은 또한 방을 빌리는 고객에게 두 번째 욕실, 부엌, 거실, 발코니를 포함한 공용지역에 대한 접근도 허용했으며, 그 공간은 총 50스퀘어미터이다. 또 무선인터넷도 무료로 제공하였다.

제인의 두 번째 방은 그 해에 150일간 임대되었다.

고객이 머물면서 공용구역(제인도 함께 사용)을 공유하는 기간 동안 제인은 공용지역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50%를 배분하여 공제요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인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근거하여 공제 가능한 비용의 범위를 계산하였다.

- 방이 얼마나 큰가? 10 스퀘어 미터
- 집이 얼마나 큰가? 80 스퀘어 미터
- 공용구역은 얼마나 큰가? 50 스퀘어 미터
- 방이 임대된 기간은? 150일

17 비용을 기록하기 위하여 호주국세청 앱에서 "myDeductions"라는 툴(tool)을 사용할 수 있다.

18 ATO, *supra* note 6.

제인은 아래의 두 개의 계산을 더한 후 그녀가 지출한 일반적 비용의 17.97%에 대하여 공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계산하였다.

- 방의 점유 - $(10+80 \times 150 \div 365) \times 100 = 5.13\%$
- 공용구역 - $((50+80 \times 150 \div 365) \times 50\%) \times 100 = 12.84\%$

제인은 전기요금, 모기지(mortgage) 이자,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요금과 같은 일반적 비용의 17.97%를 공제요청할 수 있다. 제인은 그 방을 임대하기 위해서만 지출한 비용, 즉, 플랫폼의 서비스 비용 또는 커미션 같은 비용의 100%에 대해 공제요청을 할 수 있다.

자산공유와 용역제공의 경우 비용을 납세자 혼자만 지출하여야 하고, 그 비용을 변제받아서서는 안된다.

용역제공의 경우에도 비용은 사적인 것과 수입창출 모두와 관련하여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창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3. 부가가치세 측면

(1) 호주 부가가치세 일반

호주의 부가가치세는 2000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12개월 동안 부가가치세 매출액(GST turnover)이 AU\$(이하 \$)75,000 이상인 경우¹⁹⁾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사업자 확인번호는 Australian Business Number(ABN, 이하 ABN이라 칭함)라고 표시된다. 사업자 번호(ABN)는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번호로 역할을 하고, 공급자의 ABN은 세금계산서에 일반적으로 표기가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수취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승차공유(라이드 소스)의 제공

한 개인이 승차공유(라이드 소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하면, 얼마를 벌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요금의 총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야 하므로, 금액에 관계없이 등록을 하여야 한다. 즉, 부가가치세 등록기준금액(\$75,000)은 승차공유(라이드소스)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목적상 “택시 운송”의 공급이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된 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소득도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²⁰⁾

만약 승객이 \$82.50 이상의 요금(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28일 이내에 교부를 해야 한다. \$82.50 미만의 요금(부가가치세 포함)은 세금계산서 발부를 필수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송장(invoice)만 발행할 수 있다.

19 \$75,000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20 ATO, *supra* note 6.

(3) 방 또는 주택의 임대

단기로 방이나 집의 전체 또는 일부를 빌려주는 공유경제의 유형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취급은 다른 3가지 공유경제활동(승차공유, 자산공유, 용역제공)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과는 매우 다르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거주지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²¹⁾

리스, 단기 임대(hire), 라이선스(licence)방식으로 거주지를 제공하는 것은 면세공급(input taxed supply)이다. 그러므로 만약 재산이 납세자의 거주지 또는 사적 거주투자자산이라면 임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의무가 없다. 그러나 호텔과 같은 상업적 거주 장소의 숙소 제공 또는 연회실(function room)이나 사무실 같은 상업적 장소를 임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과세가 된다.

납세자에게 임대가 가능한 사무실 장소 같은 상업적 장소를 만들도록 해주는 공유경제 렌탈온라인 플랫폼이 있다. 부가가치세 제외는 이러한 종류의 자산에 대하여 지불된 렌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개인이 사업을 수행하고 그들의 연간 매출이 \$75,000 이상이면 그들은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4) 자산공유 및 용역제공

자산을 대여하거나 리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①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75,000 이상이고, ② 사업에서 유류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것을 받고자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 목적상으로 등록을 하고 사업자번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만약 납세자가 이미 기존의 부가가치세법상 등록을 한 상태라서, 공유경제활동에도 같은 사업자번호(ABN)를 쓰고자 할 때에는 받은 모든 사업소득을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필요가 있다.²²⁾

용역제공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4. 양도소득세 측면

1997년 호주 소득세법 3-1편에서 3-3편은 1985년 이후 납세자가 취득한 양도소득세 대상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양도소득세 규정은 포괄적 규정으로 그러한 양도가 자본적 성격을 가지는지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발생 거래의 결과로 생기는 모든 이익에 적용이 된다.²³⁾ 그러나 일정한 경우 적용 예외가 존재하는데, 주 거주지 과세면제(main residence exemption)가 그 중 하나이다. 개인인 납세자는 대상 주택을 소유기간 내내 그의 주된 거주지로 삼고, 그 지분이 수익자(beneficiary)로서, 신탁관리자(trustee)로서, 또는 상속인으로서 납세자에게 이전되지 않으면, 그 주택에서 발생한 양도 차익이나 양도차손은 고려되지 않

21 *Id.*

22 *Id.*

23 Wolters Kluwer, *supra* note 14, ¶11-000.

는다.²⁴⁾ 그러나 공유경제 하에서 단기로 방 또는 주택의 일부나 전부를 단기로 임대하거나 주차공간을 임대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된 거주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면제가 부분적으로만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즉 납세자가 그의 거주지를 소유기간 동안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임대가 된 재산의 부분과 임대 기간의 길이에 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²⁵⁾ 납세자가 다른 집에서 살기 위하여 주된 거주지로부터 이사를 나올 경우에도 주거주지 양도소득세 과세면제는 전면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²⁶⁾

1997년 호주소득세법 제118조에서 제145조에 따라 만약 납세자가 일정한 기간동안 다른 집에 사기 위해서 주된 거주지로부터 이사를 나온다면 양도소득세 전액면제는 여전히 가능하다. 만약 그 자산이 소득을 발생시킬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그 주택이 납세자의 주된 거주지로 취급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은 6년이다. 하지만 주 거주지 과세면제를 확장하는 이 규정에서의 중요한 문제점은 그 자산이 납세자의 주된 거주지가 되는 것에 대한 중단(cessation)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납세자가 손님에게 숙소로 제공하거나 주차공간을 빌려주기 위하여 친구 또는 다른 가족의 집에 단기간 머무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거주지 양도소득세 과세면제 확장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IV 나가며

앞에서는 호주의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제도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호주는 공유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커짐에 따라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찍부터 정립하였고, 구체적인 예시도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잘 정립하여 왔다. 또 최근에는 연방 재무부가 소득 신고 의무제를 확립하여, 공유경제로부터 발생하는 막대한 개인 소득에 과세 자료를 확보하여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첫째, 승차공유(ride-sourcing), 둘째, 거주지 임대(renting out all or part of a house), 셋째, 자산 공유(sharing assets), 넷째, 용역제공(providing services), 이 네 가지 분류를 중심으로 하여,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거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소득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은 개인적 사용과 사업적 사용 간 최대한 정확한 배분을 통해서 비용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연간 \$75,000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거주지 임대는 제외), 승차공유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호주 국세청은 소득 및 비용의 산출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도 제시하고 있다. 아직 공유경제에 대한 과세체계가 미비한 우리나라에서도 공유경제로부터 벌어들이는 소득의 성격에 소득원천설의 입장에서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사적사용과 사업용간의 비용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공유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징수할 것인지에 대하여 더욱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호주의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체계에 대한 소개가 그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4 1997년 호주 소득세법 §§118 이하.

25 Wolters Kluwer, *supra* note 14, ¶12-135.

26 1997년 호주 소득세법 §§118-145.

참고문헌

김재진 외 2인, 「공유경제활동에 대한 과세체계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정석완, 공유경제 개념의 변화와 한국의 공유경제, 산은조사월보 제756호, KDB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2018. 11.

Wolters Kluwer, Australian Master Tax Guide, 64th Edition, Wolters Kluwer, 2019.

Daniel K. McDonald, Is the Sharing Economy Taxing to the Traditional?, 16 Fla. St. U. Bus. Rev. 73, 2017.

Shu-Yi Oei & Diane M. Ring, Can Sharing Be Taxed?, 93 Wash. U. L. Rev. 989, 2016.

[IT 칼럼]공유경제 장점, 한국 사회 꼭 필요하다, 주간경향 1335호 2019. 7. 15.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811261546421&code=114> 에서 이용가능.

Australian Taxation Office, The Sharing Economy And Tax, available at <https://www.ato.gov.au/General/The-sharing-economy-and-tax/>.

ATO hunts hidden income from Uber, Airbnb and other gig economy workers, 2019. 1. 23, available at <https://www.abc.net.au/news/2019-01-23/ato-hunts-australians-hiding-income-via-uber-and-airbnb/10742528>.